

“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”

-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
-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자 형사 처벌 신설 등 부정수급자 제재 강화
- 부정청구 신고자 ‘비실명 대리신고’ 도입, 부정수급 신고자 지원 확대

□ 앞으로 공공재정지급금*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.

* 정부 보조금, 지원금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기관이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금품 등

또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‘비실명 대리신고’를 활용할 수 있다.

□ 국민권익위원회(위원장 유철환, 이하 국민권익위)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의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공공재정환수법) 개정안이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

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고,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였다.

□ 주요 내용으로는 ▲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 형사처벌(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) 신설 ▲공공재정지급금 부정이의 환수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가산 규정 신설 ▲자진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축소 등이 있다.

□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▲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 ‘비실명 대리신고 제도’ 도입 ▲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의 친족 또는 동거인에 대한 구조금 지급 규정 신설 등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.

□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 전담 직무대리는 “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재정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가 보다 강화되고,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되었다”라고 밝혔다.

이어 “앞으로도 공공재정의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”라고 덧붙였다.

담당 부서	공공재정 환수관리과	책임자	과 장	정혜영 (044-200-7641)
		담당자	사무관	서현우 (044-200-7644)
		담당자	주무관	김시준 (044-200-7646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

구분	개정 전	개정 후
허위·과다 청구자 형사처벌	-	<u>허위·과다청구하여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급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(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) 근거 신설</u>
이자 부과 사각지대 해소	부정이익 환수 시, 이자 가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자 부과 불가	이자 가산 규정이 없는 경우, <u>이자 부과는 「공공재정환수법」을 적용</u>
자진신고 효용성 제고	부정이익 환수 시, 「행정절차법」상 사전통지 전에 부정수익자가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, 제재부가금 면제	제재부가금 면제뿐만 아니라 <u>감경도 가능</u>
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	-	신고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<u>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신고 가능</u>
구조금 신청 근거 신설	신고자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의 소요비용을 보상금에 포함하여 국민권익위에 신청	신고자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의 소요비용에 대한 <u>구조금 신청 가능</u> 신고자뿐만 아니라 <u>그 친족 또는 동거인도 부정청구 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육체적·정신적 치료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, 국민권익위에 구조금 지급 신청 가능</u>